

의안번호	2202813
의 퇴 인	위성곤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6.
추 계 번호	24F28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국제선박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을 위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18.1억원, 2027년 18.1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54.4억원(연평균 18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국제선박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64조제1항)	소계	-18.1	-18.1	-18.1	-54.4	-18.1
	취득세	-18.1	-18.1	-18.1	-54.3	-18.1
	재산세	-0.05	-0.05	-0.05	-0.16	-0.0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4조제1항 (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)	○ 「국제선박등록법」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- 내용: (취득세)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2%p 감면 (표준세율 2.02~3%) (재산세) 50% 감면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4조제1항 (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국제선박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(2019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추계방법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(2019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동 감면에 따른 최근 5년(2019~2023년)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재산세 감면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취득세 감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음

[표 2] 국제선박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감면액
취득세	8.9	21.1	34.8	15.9	9.8	18.1
재산세	0.07	0.07	0.04	0.02	0.07	0.05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을 위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18.1억원, 2027년 18.1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54.4억원(연평균 18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국제선박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 한 연장(안 제64조제1항)	소계	-18.1	-18.1	-18.1	-54.4	-18.1
	취득세	-18.1	-18.1	-18.1	-54.3	-18.1
	재산세	-0.05	-0.05	-0.05	-0.16	-0.05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